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207
------------	------

2024년 11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이원형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4년 11월 2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원형 의원)

가. 제안이유

○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2024. 10. 27.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12년 이후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 이상 카드 활성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액결제에 대한 지원은 필요
  - 소액 카드결제 시 하차시간 단축, 현금 미휴대로 편리 및 범죄 예방 효과
- 개인택시의 경우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카드수수료율이 0.77%로 매우 낮은 등 카드수수료 지원 설득력이 약함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 수입 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되었고, 카드수수료율이 1.6%로 높고 카드결제율의 증가로 카드결제수수료 총액의 증가, 운전원 감소 등 경영난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함

---

1) 택시정책과-16298호(2024.11.1.)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sup>2)</sup>를 그대로 반영하되 지원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이용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5차례(2013년<sup>3)</sup>, 2015년<sup>4)</sup>, 2017년<sup>5)</sup>, 2019년<sup>6)</sup>, 2021년<sup>7)</sup>)에 걸쳐 지원

---

2)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6호, 2011. 12. 29., 제정]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2013.10.4. 일부개정·시행

4) 2015.10.8. 일부개정·시행

5) 2017.12.28. 일부개정·시행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였고 '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하지 않았음

- 서울시가 카드결제율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행 조례가 시행된 2012년에 50.3%이던 카드결제율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86.7%까지 높아진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11년부터 '22년까지 매년 35억원에서 79억원의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바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택시는 주·야간 동일하게 1만원 이하로, 개인택시는 주간<sup>8)</sup> 5천원 이하, 야간<sup>9)</sup> 8천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지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카드결제율 (%)	44.7	50.3	58.8	59.2	62.2	67.4	70.2	73.6	75.5	83.4	85.2	85.6	85.1	86.7
예산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3,550	5,690	5,900	-	-
지급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2,946	4,210	4,857	-	-
지급대상	미지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	-

6) 2019.9.26. 일부개정·시행

7) 2023.12.30. 일부개정·시행

8) 주간시간대 : 08시~20시(12시간)

9) 야간시간대 : 20시~익일08시(12시간)

※ 법인·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법인 22년, 개인 21년 기준)

사업자	구분	대상요금액	지원범위
법인택시	주간	10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6% 지원
	야간	10천원 이하	
개인택시	주간	5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1% 지원
	야간	8천원 이하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최근 카드결제율이 86.7%에 이를 만큼 카드사용이 정착되어 예산지원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과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가 개선되어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코로나19의 영향,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의 지속적 확충과 시설개선 및 플랫폼 택시 도입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업계의 영업 수입이 크지 않고 현행 조례의 일몰 기한이 지나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에 일부나마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택시(법인/개인) 운송수입금(최근 5년)<sup>10)</sup>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
운송수입금	개인	15,109억원	15,841억원	19,413억원	22,997억원	17,554억원
	법인	11,878억원	10,292억원	11,019억원	12,369억원	9,276억원

10) 서울시 내부자료

-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있으나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12년 7월 이후,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개인은 '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은 '19년 이후 변동이 없어 카드 수수료 지원시 선불카드 수수료와 법인택시 후불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율 변화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선불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후불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 1.6% 개인 1.5%		법인 1.6% 개인 1.1%			법인 1.6% 개인 0.77%		

- 한편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수 업체에 지급하였지만 택시운수종사자 처우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19년과 23년 2차례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수수료를 요금인상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원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0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원형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송도호, 신복자,  
아이수루, 우형찬, 유정희,  
, 이민옥, 이영실,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나.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

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부정사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당부서(택시정책과) 문의 결과,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 중인 택시(개인택시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시 4,00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예산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계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